

의안번호	2216948
의 퇴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A1000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4조의2(상표권 등 침해 여부 모니터링)	-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-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114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침해행위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237조제1항(과태료)	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판매매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14조의2(상표권 등 침해 여부 모니터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4조의3(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
3	안 제237조제1항(과태료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고 침해 행위 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 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,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
 - **재정지출의 증가**는 온라인 상품 거래에서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함에 따라 발생
 - － 개정안은 ①제114조의2를 신설하여 온라인 상품 거래에서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, ②제114조의3을 신설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고 침해 행위 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**재정수입의 증가**는 법률상 의무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함에 따라 발생
 - － **안 제237조제1항**은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,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(세외수입)이 증가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, 온라인 모니터링의 시행 규모,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및 유지관리 비용, 법률상 의무행위 위반에 따른 추가 과태료 부과액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**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**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행 규모 및 모니터링 전담기관 지정 여부 등을 가정하여야 하며,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

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국가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, 현시점에서는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과태료 징수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의무 위반행위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, 현재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에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상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, 의무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(순 재정부담)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